

第二回 全國大學圖書館 大會發表 論文

大學圖書館의 職制確立

鄭 然 植

一. 序 論

大學圖書館의 職制確立의 問題는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為하여 오래前부터 論議되어 온 가장 important한 問題라 하겠습니다. 問題가 示唆하는 바와 같이 그 importance이 切實하므로 이 자리에 參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平素부터 多은 關心事가 되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리 잘 알고 있는 問題를 제자 이 자리에서 論議하게 된趣旨는 어떤 問題를 提示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좋은 解決策을 摸索하여 圖書館法을 基礎로 制定된 諸法令에, 특히 大學圖書館 職制確立에 關한 것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 싶이 圖書館이 成立되는 構成要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圖書資料이겠고 둘째로 人的要素로써 圖書館 專門職이며 셋째로 圖書館 施設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以上 三要素는 圖書館奉仕上 어느 한가지라도 빠 놓을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中 가장 important한 要素라고 生覺되는 것이 圖書館 專門職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生覺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私見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人的要素라는 것은 動的動態的 意味로 解釋 할수 있으며 나머지 圖書資料와 圖書館 施設은 前者에 比해서 靜的靜態的 被動的要素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資料와 같은 도서관 施設로써 이를 management運營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다더 效率의 成果를得出할 수 있으며 研究와 調查에 보다더 훌륭한奉仕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大學圖書館의 使命이 深奧한 學術研究와 教授하는데 바탕이 되는 資料의 提供과 研究活動의 助成에 있다며 오늘날 圖書館의 共通的觀念으로 通用되는 “奉仕하는 圖書館” “살아 있는 圖書館” “活用하는 圖書館”을 生覺할 때 그 運用面이 얼마나 important한 課題이며 더구나 이를 圖書資料와 圖書館施設이라는 두 가지既定의 與件으로써 이 崇高한 目的을達成하기 為하여서는 決定的要素인 人的要素야말로 圖書館運營의 成敗를 左右하는 key poin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職制確立이 더욱 important하다는 것을 再認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組織이 없고 體系化되지 않은 人的要素로 하여금 圖書館奉仕라는 (具體的인 實例는 略略) 目的達成을 為하여 體系的으로 組織화하여各自가 맡은 業務機能을 最高度로 發揮하게끔 하는 것이 職制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龐大한 圖書資料를 蔑集하여 整理保存하고 讀者로 하여금 圖書館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게끔奉仕하기 為해서는各自 한사람 한사람씩 組織化 되지 않은 個別的 部分으로써는複雜하

고 多樣한 大學圖書館의 使命은 勿論 達成될 수 없을 것이며, 舊態依然한 從來의 窄은 觀念에 사로 잡혀 圖書館이 圖書의 保存만으로 그친다고 生覺해서는 그맡은 바 任務를 다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大學圖書館의 發展은 期待하지 못할 것입니다.

圖書館이 研究活動의 溫床이 될 수 있는 모든 研究資料의 發祥地라고 할수 있다며는 圖書館의 發展은 곧 大學의 發展이요 圖書館의 衰退는 곧 大學의 運命과 關係가 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貴重한 機關을 管理運營하는 人的組織을 決코 疏忽히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二. 現行法上에서

본 我國의 實情

우리 大學圖書館이 尚今도 大部分 專門職을 中心으로 한 職位와 職責이 뚜렷한 職制가 確立되지 않았다는 것은 不幸히도 그만큼豫期할수 있는 훌륭한 成果를 目前에 두고 결우지를 못했다는 것을 證明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태까지 任務와 責任의 輕重이라든지 權利의 限界를 法律이 保障하는範圍內에서 뚜렷하게 認識을 하고 成功的 圖書館經營을 해왔다 고 自負할 수가 없읍니다. 비록 自律的으로 合理的 近代的方式에 依하여 運營管理를 했다고해도 容觀의 認定을 하는 뚜렷한 基準이 되는 法律의 保障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러한 現實의 隘路를 무릅쓰고 館長以下 實務를 맡으신 여러분께서 圖書의 統計表가 보이는바 해마다 增加一路를 걷고 있는 圖書館利用率을 檢討해 볼때

에 보다더 至大한 劳苦의 結果라고 보아 높이 評價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大學圖書館의 職制確立이 必要하다는 말씀과 이러한 職制의 確立없이는 圓滑하고도 成功的인 大學圖書館의 運營은 期待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제 우리나라 現行法令上에 나타난 大學圖書館의 職制와 關聯이 되는 條文을 例를 들어 現況에 關하여 說明을 드릴까 합니다.

1953年 4月 20日에 制定, 大統領令第1, 168號로 公布되었던 國立學校 設置令은 其後數次나 改正되었읍니다만, 第6條에 보면 「國立大學校에 總長 副總長과……」라고 되어 있고 本條項에 司書官과 司書의 職位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同法第7條에 國立大學校의 研究施設에 각各長을 둔다고 明示되어 있고 同法第8條에서 第12條까지는 서울大學校를 包含한 其他 國立大學校에 處局課의 設置條項을 두었으며 特히 第13條에는 同一한 附屬機關인 「醫大附屬病院에 廉務課, 看護課, 藥局을 둔다」라고 規定되어 있는데 注目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以上 말씀 드린바와 같이 國立學校設置令第6條에 他職과 同一하게 司書官과 司書職을 設置함을 明示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同法第8條에서 第12條에 이르는 處局課의 設置와 더나아가서 同一한 附屬機關인 醫大附屬病院에 課設置를 成文化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附屬圖書館의 職制에 關해서는 一言 半句도 言及을 볼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例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境遇는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職位를 設置하

고 職制의 確立을 明文化하지 않은 것도
現行法上 矛盾입니다마는 그것보다도 大
學에 있어서 圖書館의 位置를 全然 考慮外
로 하여 現實的으로 大學이 그 첫 使命으
로 하고 있는 調査 및 研究와 教授活動을
圓滿히 進行助成시킬 수 있는 圖書館의 機
能을 格下하므로써 所期의 成果를 獲得할
수 없음은 大學運營自體의 缺陷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因하여 教育成果로 보아
많은 損失을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缺陷은 하루 速히 是正됨으로써
同一한 資料와 施設로써 몇倍의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比하여 가까
운 日本의 例를 들어 보겠습니다.

國立學校設置法 第二章 國立大學篇

第6條에 國立大學에 附屬圖書館을 둔다
라고 되어 있는 法을 바탕으로 하여

國立學校設置法施行規則中

第一章 國立大學

第九條 第三項 館長은 當該國立大學校
教授로써 補하며 分館長은 當該國立大學
校의 教授 또는 助教授로써 補한다.

但 必要가 있을 때는 館長 又는 分館長
은 事務職員으로써 이를 補할 수가 있다는
條項도 있음을 參考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同法第十一條에 보면 附屬圖書館은
他研究機關과 同一하게 事務處理를 為해
서 그 規模에 따라 事務部와 事務室을 設
置할 수 있게끔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따
라서 여기에 각각 部長과 室長을 두게 되
어 있습니다.

日本大學基準協會總會에서 1952年 6月
16日에 決定한 大學圖書館基準에 依하면
第2基準

三. 組織 及 運營

1. 圖書館의 事務組織은 그 規模에

따라 充分히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構成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
고

2. 司書의 能力規定

3. 司書 人員數는 圖書資料와 利用者
에 따라서 適切하게 簡定되어야 한
다

고 되어 있습니다.

1953年 1月 文部省 大學學術局

國立大學圖書館 改善要項

◎ 大學圖書館의 機構와 運營에 關하 여 보면

大學圖書館의 使命을 為하여 그
機構와 運營이 全學의 立場으로 確
立되어야 함을 強調하였으며 司書職
員이 館長, 分館長, 部局 圖書室
主任에 任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大學圖書館의 職員組織에 關하여 記述한 것을 보면

圖書館任務의 重大性에 비춰 學
門의 知識과 專門의 技術의 向上에
따라 職制職級의 改善을 圖謀할 것과

① 司書業務의 困難性을 克服하여 不斷히 學門의 研究를 必要로 하 는 幹部職員의 教授職關與

② 大學에서 圖書館講座의 開設로 因한 參與

③ 豐富한 學術資料 및 研究職員의 設置

教授, 助教授, 講師, 助手와 같은 制度
를 設置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6年 5月에 發表된 私立大學圖書館
改善要項中 行政에 關한 事項을 보면 :

2의 (1)項에 圖書館에 館長 副館長 館
員의 三種 職員을 둘다고 해놓고 副館長
은 司書中에서 館長이 設立하는 者로서
任期 없이 館長을 補佐하고 有故時 館長을

代理하게끔 되어 있고 더구나 館長은 教授 또는 司書中에서 大學이 委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館員은 規模의大小에 依해서 部長, 課長, 係長 等을 두어 館務의 處理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美國에 있어서는 諷一的인 待遇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우리와는 많은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美國에서는 大學圖書館을 職制上 類別하면 세 가지 種類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大學教授의 職名을 받고서 일을 하거나 教授와 同等한 待遇를 實際 받고 勤務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專門職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境遇이며

셋째는 事務職으로 그대로 일을 하는 境遇입니다.

以上 말씀드린 경우에 있어서도 大體으로一部署의 責任者는 大概 教授의 待遇를 받으며 副責任者는 副教授와 同等한 待遇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美國의 모든 圖書館 責任者는 모두가 圖書館 專門教育을 받은 분이 이를 擔當하게 되어 있는 것 입니다.

以上 말씀드린 것은 先進國家에서는 별 써 오래 前부터 施行하고 있는 事實인 것입니다.

獨逸은 1938년 8月 18일 나치 政權이 圖書館 職員 職級 規程을 制定하였고 1940년 이를 改正하여 圖書館 職員은 上級, 中級, 下級의 三職階로 나누고 上級職員은 專門科目的 博士號를 가진 者로서 1年乃至 2年 圖書館 學校 또는 圖書館에서 專門 education을 받은 者를 有資格者로 하고 있습니다. 學術圖書館에서는 見習期間을 두고 이中은 助手라하고 이를 마쳐야 專

門職이 되는데 專門職中에도 司書試補, 司書補, 司書의 段階를 두고 職級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佛蘭西에서는 1932年 國家試驗에 依하여 圖書館員 免狀制度를 規定하여 이 試驗에 通過해야만 專門職免狀을 政府에서 授與 받고 國立大學 및 市立圖書館等의 職員資格을 갖게 됩니다. 1952年부터는 但 Paris 市內館長이 되려면 이 免狀外에 文學博士의 稱號를 가져야만 된다고 합니다.

以上 專門職과 關係하여 數個國의 司書의 資格, 職位, 待遇 및 圖書館의 機構等에 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實際圖書館의 管理上 部·課·係等을 設定하는데 關하여 말씀드리자면 管理上組織部署의 設定에는 다음 몇 가지型이 있습니다. 即

- ① 圖書館의 機能別로 部署를 組織하는 機能別 部署 組織
- ② 資料의 主題에 依해서 部署를 組織하는 主題別 組織
(各部에서 貸出 參考業務等을 함께하고 있음)
- ③ 資料의 形態에 따라서 部署를 組織하는 資料別 組織
(定期刊行部, 文書部, 音響奉仕部, 學位論文部 等으로 區別)
- ④ 讀者型에 依하여 部署를 組織하는 讀者型別 組織
等이 있읍니다만 어는 것이든 絶對的인것이라고 主張할수는 없고
圖書館의 性質, 規模라든지 奉仕하는 目的等에 따라서 合目的的으로 組織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組織構造의 形態에도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即

1. 線型組織(系統式)
 2. 幕僚式組織
 3. 合議式組織
 4. 機能式組織
 5. 線型·幕僚折衷式組織 等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만 모두 一長一短이 있읍니다만, 一般的으로 많이 利用되고 있는 線型幕僚式組織이 가장 適合하다고 하겠읍니다.
- 組織構造는 作業量에 關하여 實行可能한 範圍 即 責任의 限界를 明示해 주므로 각者의 任務를 自覺하게 되며, 上位者로부터 權限의 委任이 커짐에 따라 責任도 同時に 加重해지므로 責任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圖書館業務라고 하여 이러한 組織原則上 根本적으로 例外일수는 없읍니다.

三. 結論

以上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大學圖書館의 職制確立에 關하여 韓國의 現實情과 法上의 地位를 中心으로 日本을 為始한 餘他數個國과 比較하여 보았읍니다.

어느 分野라도 그러하거니와 特殊分野에 特殊한 資質과 能力を 具備한 專門人이 當該業務을 擔當하지 않을때 그일의 進展과 成果는 不問可知事라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 周邊에도 “圖書館은 圖書館人으로”라는 口號와 함께 顯著하게 發展하고 있음은 事實입니다. 많은 사람이 專門教育을 받고 資格을 얻어 앞으로 있을 이 方面의 發展을 為하여 慶賀할 일이라 하

겠습니다. 그러나 專門職만으로서 職務遂行이 完全하게 된다고는 保障할 수 없읍니다. 그 職務의 內容과 責任의 限界를 明確히 해주는 組織體로써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有機的 機構가 必要한 것입니다. 이러한 機構는 業務遂行에 根幹이 되는 것입니다. 業務의 重要性에 비춰 他部處의 그것과 比重이 같아야 圆滑한 作用을 할 수 있으며 所期의 成果를 獲得할 수가 있읍니다.

職位設定問題에 있어 서도 職級問題는 좁은 視野에서 보면 館內의 管理運營의 問題에 限定된 것 같읍니다만 學內他機關에 關する 業務遂行上 여러 가지 困難한 問題를 隨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難問題는 職制確立만이 이를 解決할 수 있는 宿命의 인 要素라고 하겠읍니다. 많은 뜻있는 人士가 圖書館界에 投身하여 奉仕精神에 스스로의 深 을 불살으면서 平生토록 이 方面의 發展을 為하여 獻身努力하여도 우리의 後進성이 早速한 時日內에 克服하기 어렵거늘 有能한 사람들이 자리를 뜰 때마다 哀惜한 마음 館界의 將來를 미루어 봐서 寒心하기 짙어 없읍니다.

晚時之感이 있기는 합니다만 大學圖書館의 職制가 하루 連히 確立되어 業務遂行에 萬全을 期할 수 있다면 多幸일뿐 만 아니라 韓國圖書館의 中樞를 이루고 있는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為해서라도 早速한 時日內에 이의 達成이 이룩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筆者：慶北大學校 圖書館司書長)